

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

[시행 2023. 12. 29.] [규칙 제4606호, 2023. 12. 29., 타법개정]

서울특별시(도시철도과), 02-2133-4343

제10조(매입확인증의 징구) ④ 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 제14조 및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채를 매입하게 하여야 하는 자 (이하 "징구기관"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징구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5.28, 2019.10.1, 2023.10.19>

- 1. 면허,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: 면허증,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
- 2.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: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
- 3. 건설공사도급계약,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: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할 때.(대금을 분할 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)
- 4. 신고를 하는 경우(관계부처 장관의 협의를 의하여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중음식점 영업신고) : 신고서를 접수할 때

② 제1항에 따라 징구한 매입확인증은 즉시 소인하고 징구일로부터 7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5.28>

③ 징구기관에 제출하는 매입확인증과 계좌개설용인 매입증서는 매출대행기관이 중요증서에 준하여 관리하고 매입확인증 발행내역은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관계기관간 대조·확인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5.5.28, 2021.1.14>

[전문개정 2009.12.10]

[제목개정 2015.5.28]